KiRi Weekly 2012.12.24

금융보험 해설

퇴직연금의 이해 1: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오병국 연구원

- 퇴직금제도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근거한 것이며, 수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왔음.

  - 1989년 3월 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체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2010년 12월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

- 퇴직금제도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을 고용주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지급하거나, 고용주 단독부담에 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해 퇴직금 산정 시 이용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의 월평균을 사용토록 되어 있음.
  - 고용주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야 함.
    -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방법은 사내적립, 사회전환자금으로 활용, 금융기관으로의 사외적립 등이 가능함.

- 이러한 퇴직금제도에 대하여 노후소득보장기능의 미흡, 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미적립 퇴직금채무와 기업의 재정부담, 지불보장성 미약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 퇴직금제도 하에 이직 시마다 정산되는 퇴직일시금이 근로생애기간동안 가계소비 수요에 따라 소

진되면서 노후소득원으로서의 실질적 기능이 부족할 수 있음.

- 고용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전체 근로자 중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등의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과거 평생고용 모델하에 장기근속자 중심으로 설계된 퇴직금제도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재고를 요구받음.
- 퇴직금은 법정지급률(약 8.3%)이 주요 선진국의 퇴직연금 기여율에 비해 낮지 않으며, 대부분 미적립 상태로 기업회계상 부채로 축적되고 있음.
- 임금의 인상률이 퇴직금에 그대로 반영되며, 누진율을 적용할 경우 연공서열적 보상체제에 의해 근속연수에 따른 누진율의 증가폭이 과다할 수 있음.
- 기업도산 시 우선해서 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는 최종 3년간의 근로자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한정됨에 따라 퇴직금의 법적 보장 장치가 약한 편임.

전술한 바와 같은 현행 퇴직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퇴직금제도 중 사외적립형태인 퇴직보험[1]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 게다가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사내유보 퇴직금제도에 비해 기금의 적립과 운용, 연금수급권, 급여지급형태, 연금이관성 등에서 장점을 갖고 있음(〈표 1〉 참조).
- 이에 2005년 1월에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표 1〉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부담주체	고용주	고용주
기금적립방식	사내유보	사외위탁
기금운용성향	소극적	적극적
연금수급권 보장	불가능	가능
급여지급 형태	일시금	연금
전직시 연금이관	불가능	가능

자료: 이봉주 · 류건식(2006), 「퇴직연금론」.

1) 2011년 퇴직보험은 완전 폐지됨.